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20호

2022. 10. 17.(월)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8453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제8454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
제8455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8456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제8457호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8458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제8459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제8460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제8461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16
제846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제846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제8464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제8465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제8466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제846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제846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37
제8469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47
제8470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0
제8471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제8472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제8473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59
제8474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2
제8475호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64
제8476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7
제8477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68
제847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 69
제8479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0
제8480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73
제848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82
제8482호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제848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95
제8484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7
제8485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0
제848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5
제8487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9
제8488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0
제8489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1
제8490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112
제8491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6
제8492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8
제8493호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121
제8494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125
제8495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28
제8496호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129
제849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2
제849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4
제8499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6
제8500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7
제8501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9
제8502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0
제8503호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143
제8504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8
제8505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49
제8506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0
제8507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51
제8508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8
제850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9
제851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1
제8511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3
제8512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7
제851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68

[훈 령]

제1042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169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3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을 “(법 제2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가산금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상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통합하는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가 2024년 1월 1일로 연기되고, 세무사법 상 세무대리업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직접 부과징수하는 고액체납액 범위 규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금'으로 용어 변경(제3조제2항제4호)

나.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규정에서 공인회계사 관련 세무사법 인용문구 변경(안 제9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4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지원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시장의 책무(제1조 및 제2조)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 운영 · 구성(제3조 및 제4조)
다.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제5조 및 제6조)
라. 지원단 재난현장 설치(제7조)
마. 재난상황 공유 · 보고, 활동 평가 · 기록에 관한 사항(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5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은 대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총장이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설기관”을 “부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문연구”를 “학문 및 시정연구”로, “부설연구소는”을 “부설연구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부설연구원을 제외한 대학교의 학문연구를 위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부설연구소의”를 “부설연구기관의”로, “부설연구소에”를 “부설연구기관에”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대학”을 “대학 및 대학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 조정 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며, 부설연구원과 부설연구소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시대변화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 조정 대상 중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4호)

나.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을 신설함(제3조제2항)

다. 부설연구원은 규칙으로, 부설연구소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분리하여 규정함(제7조제2항, 제3항, 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6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의안 제출 시 주관부서에서는 학술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학술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 중인 학술용역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되었으나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학술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유사 · 중복 과제 반복 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제출시 유사 · 중복 용역 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 추가(제9조제3항)
나. 부실용역 방지를 위한 용역실명제 의무화(제14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7호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를 “종료된 후 지체없이”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연구결과 공개시점을 개정하고,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하여 연구의 활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의 공개시점을 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종료된 후 지체없이’로 개정(제4조제1항)
나.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포함된 경우 부분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 사유 및 공개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함(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8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표 중 테니스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란 아래에 파크골프장란 및 파크골프장물품대여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테니스장	면당 1회 2시간 이내, 단체 독점 사용 시	7,000~11,000원 ※ 토요일·공휴일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함. ※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 시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조조시간은 조명 이용하더라도 가산하지 않음. ※ 야간시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함. 다만, 토요일·공휴일 야간시간에는 가산하지 않음.
	월간 정기사용 시(조조시간에 한하며 1일 2시간이내 사용)	108,000~154,000원
	1면 1회 10시간 이내 전용사용(체육경기) 시	70,000~150,000원
파크골프장	어린이(6세 이상 12세 이하) 1회당	2,000 ~ 3,000원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 1회당	3,000 ~ 4,000원
	성 인(19세 이상) 1회당	4,000 ~ 6,000원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 2,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 중 테니스장란의 개정규정은 기 체결된 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한강공원 이용시설의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한강공원 테니스장 기본이용료를 정비하고, 야간(조조시간 조명이용 시 포함) · 토요일 · 공휴일 가산제 및 체육경기용의 전용사용제 징수기준을 신설함(별표 2 제2호).

나.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징수기준을 신설함(별표 2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59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에 맞추어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서식] 입원환자 서약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성별)’로 변경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0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먹거리생태·상생분과"를 "먹거리생태·상생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먹거리건강·보장분과"를 "먹거리건강·보장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먹거리공동체분과"를 "먹거리공동체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를 "먹거리문화교육홍보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중 "2022년 9월 21일"을 "2024년 9월 2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 및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정책기획관 삭제(제23조)
나. 분과위원회 명칭 정비(제28조)
다.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21일까지 연장(제3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1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전상 · 공상 청년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등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라 함은「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라 함은 「군인재해보상법」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라 함은「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 〔퇴역 · 면역(免役) 또는 상근 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라 함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라 함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국가 수호의 임무를 수행하다 장해를 입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훈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사람
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중 군 복무 중 장해로 전역 후「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한 사람
4. 그 밖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훈관련 법률상담 및 행정절차 등 정보제공
2.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3. 취업상담 및 일자리 정보제공 등 지원
4.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한 상담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행·위탁) ① 시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

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출자 ·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 · 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적정보의 수집 · 관리 등)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 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제공자에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 ·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 ·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그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제1조~제3조)

-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등의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 지원 노력

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제4조~제5조)

- 군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8조)

- 청년 장해 제대군인 및 청년유공자의 건강한 삶과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상담센터'의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라. 인적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정보제공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수집·관리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2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 제5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때"를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로 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5억원 이상인 재산"을 "5억원 이상인 재산(단, 연접하거나 동일한 사업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대장가격을 합산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0조의3"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단서는 삭제한다.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3.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4.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5.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다.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마. 영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바.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중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회”로 하고,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무상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제19조의 제목 및 본문과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을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본문 중 “사용·수익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35조에 따라”를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제4항 중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를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라”로 하고, 제5항 중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를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그 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는 삭제한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 제2호 중 “3회”를 “4회”로 하고, 제3호 중 “9개월 이내 4회”를 “10개월 이내 6회”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4호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납기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시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불확실한 용어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제4조의2).

나. 시의 귀책 사유로 시유재산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30조제6항).

다. 대부료의 납기 관련 '납부기간'을 '납부기한'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최대 분할납부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제33조).

라. 2012.12.31.이전부터 서울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과 같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수의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신설(제3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3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계획"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상위법 인용조문 현행화 등을 위하여 조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함(제3조제3항).
나.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하고자 함(제7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4호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중 "산하기관"을 각각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중 "시와 그"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와 시"로 하고,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제9조의2를 제10조의2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제11조부터 제17조로까지로 하며 제9조와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심의 · 의결 시 별지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제5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의2(종전의 제9조의2)제3항 중 “공개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15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중복 위촉 · 연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시의원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잔여임기동안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서식]

청 렴 서 약 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　　』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과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회의록 공개 원칙을 강화하며, 조례 적용 대상 위원회 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적용되는 위원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함(제1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나.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과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함(제9조 및 제9조의2).

다. 시의회 요구 및 청구 시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0조의2제5항).

라. 법률 등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경우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제10조의2제6항 및 제7항)

바. 청렴서약서 서식을 마련함(별지 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5호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협의· 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까지 포함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안건 검토·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면회의 증가에 따라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제외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의 종류를 이해하기 쉽도록 자구 체계를 정비함(제4조제1항).
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 규정(제4조제2항제1호).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울시의회 의원 규정. 단, 시의원은 회기가 없는 경우 참석 시 실비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지급(제4조제2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6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과 그"를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 자치구·시장·서울특별시의 자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장"으로, "장이"를 "장,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이"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퇴직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렴서약)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5조의3(사전신고 등)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5.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위촉 전 경력,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 중 “기피한”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정한다”를 “정하되, 연임횟수는 3회로 제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법률고문 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고문의 업무범위에 자치구 또는 자치구청장의 쟁송 및 자문사항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소속 지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쟁송사건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금지함(제3조).

나. 시의 퇴직 변호사는 퇴직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률고문 위촉을 제한함(제5조 제2항).

다.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5조 제3항).

라. 법률고문에 대한 청렴서약 및 이해 충돌 사전신고를 신설함(제5조의2, 제5조의3).

마. 법률고문에 대한 해촉 가능 사유에 실적 저조 사유를 추가함(제6조).

바. 법률고문의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7호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별표의 ▢ 여성가족정책실 표 주관부서란 중 "가족담당관"을 "아동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표 중 사회적경제담당관란을 삭제하고, 공정경제담당관의 제5호란 아래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		구청장
	가. 설립신고	o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나. 정관변경 신고	o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다. 합병 및 분할 신고	o 「협동조합 기본법」 제56조	
	라. 해산신고	o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마. 과태료 부과징수	o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바. 신고확인증 발급	o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의 ▢ 노동 · 공정 · 상생정책관 표 중 공정경제담당관란 다음에 농수산유통담당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수산유통담당관	1. 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o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	구청장

별표의 ▢ 기획조정실 표 주관부서란 중 "조직담당관"을 "시정연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 경제정책실 표 중 도시농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도시교통실 표 중 물류정책과란을 주차계획과란 다음으로 이동하고 보행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문화본부 표를 ▢ 기후환경본부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환경정책과”를 “기후환경정책과”로, 대기정책과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과의 제2호란부터 제4호란까지를 각각 제1호란부터 제3호란까지로 하며, 차량공해저감과란을 삭제하고, 대기정책과란의 제3호란(종전의 제4호란) 다음에 제4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의 ▢ 기후환경본부 표 중 생활환경과 제3호의 수임기관란 중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과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배출가스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단, 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o「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o「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제70조의2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o「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5. 교통소음·진동의 규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운행차의 수시점검(시장은 광역적인 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다)	o「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나. 운행차의 개선명령·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 결과의 보고 수리	o「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사무		구청장
	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보고 및 오염도 검사	o「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	
	나. 과태료처분 통지 등 부과 및 징수	o「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4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별표의 ▢ 행정국 표를 ▢ 시민건강국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관광체육국 표를 ▢ 문화본부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시민건강국 표를 ▢ 관광체육국 표 다음으로 이동하고, ▢ 시민건강국표 주관부서란 중 “건강증진과”를 “스마트건강과”로 하며, 동물보호과란을 삭제한다.

별표의 ▢ 안전총괄실 표 중 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란 다음에 도로관리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관리과	1. 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고속국도 및 시청앞 광장 제외)		구청장
	가. 도로의 점용허가	ㅇ「도로법」 제61조	
	나. 점용료의 부과·징수	ㅇ「도로법」 제66조	
	다. 변상금의 부과·징수	ㅇ「도로법」 제7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ㅇ「도로법」 제117조	

별표의 ▢ 도시계획국 표를 ▢ 주택정책실 표 다음으로 이동한다.

별표의 ▢ 주택정책실 표 중 주택정책과의 제1호란 다음에 제2호란 및 제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건축기획과란을 공동주택지원과란 다음으로 이동하며, 건축기획과란의 사무명란 제1호나목 중 "다만,「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를 "다만,「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로 하고, 전략사업과란을 삭제한다.

	2. 민영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이행, 취소 등	ㅇ「주택법」 제15조, 제16조	구청장
	3.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	ㅇ「주택법」 제43조, 제44조	구청장

별표의 ▢ 균형발전본부 표 주관부서란 중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정비과"로 한다.

별표의 ▢ 푸른도시국 표 제목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하고, 조경과 제2호의 수임기관란 중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같은 과 제5호의 수임기관란 중 "관할 공원녹지사업소장"을 "관할 공원여가센터소장"으로 각각 하며, 자연생태과란 다음에 동물보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사목의 근거법령란 중 "「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을 "「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동물보호과	1.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ㅇ「축산법」 제12조	구청장
	2. 사료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등 록	ㅇ「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나. 시설변경	ㅇ「사료관리법」 제8조제3항	
	다. 등록증 재발급	ㅇ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라. 영업의 정지·등록의 취소	ㅇ「사료관리법」 제25조	
	마.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ㅇ「사료관리법」 제26조 및 제36조	
	바. 업무감독	ㅇ「사료관리법」 제27조	
	사.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ㅇ「사료관리법」 제8조제6항	
	아. 승계신고	ㅇ「사료관리법」 제9조제3항	
	자. 폐기 등의 조치	ㅇ「사료관리법」 제24조	
	차. 청문	ㅇ「사료관리법」 제30조	

별표의 ▢ 물순환안전국 표 중 물순환정책과란을 삭제하고, 주관부서란 중 “하천관리과”를 “치수안전과”로 하고, 치수안전과(종전의 하천관리과) 제3호란 다음에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물재생계획과란을 치수안전과란 다음으로, 물재생시설과란을 물재생계획과란 다음으로 각각 이동한다.

-	4. 물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물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ㅇ「물환경보전법」 제23조	구청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 간 기능조정 사항,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의 주관부서를 조정하고 개정된 직제순서 반영
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소관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사무 관련 인용조항 수정(「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 제82조)
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자치구 위임사무 중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소관 '사료제조업에 관한 사무 중 휴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사무에 대한 인용조항 수정(「사료관리법」 제8조제4항 → 제8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8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기준보조율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2. 공원 · 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3. 도로 · 교통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5. 산업경제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6. 도시안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7. 문화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일반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및 보조사업의 특성상 기준보조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적용대상이 되는 자치구의 범위 및 적용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시장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6조(자치구의 부담의무)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자치

구의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자치구의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구 부담경비의 협의)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2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조건을 붙이는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명단 공표
   나. 법 제32조에 따른 수행 배제
   다.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라.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3.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 결정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

제12조(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방보조금의 교부 방법) ①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 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 · 대상 · 방법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에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25조와 영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명단 등의 공표)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제2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 · 징수)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지방보조금의 관리)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을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회의개최 시마다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지방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시정 각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 또는 지방보조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공모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기준 등에 대해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32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각각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를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조문 체계를 일치시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이 완결성을 높이며,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구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보조사업 분야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 범위를 규정함(제3조).

나.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공모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공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제9조).

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해 검증받아야 함(안 제16조).

마.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

바.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는 취득 후 15일 이내, 중요재산 변동현황의 경우 매년 6월 및 12월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안 제20조).

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의 법령위반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3조).

아.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자.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음(안 제25조).

차.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

카. 시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9조)

타.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의회 제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 신고포상금 지급,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명단 공표 여부, 공모 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3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69호

서울특별시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상담 및 보호, 의료, 법률, 사례관리 등 지원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수사·재판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 · 청소년 지원센터에 소속된 상담원의 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4.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학업지원, 진로·취업지원, 자립수당, 주거지원 등 자립 지원
5.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6.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서·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등)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아동 · 청소년 대상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 · 청소년, 아동 · 청소년 성착취,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등의 정의 규정(제2조)
나. 아동 · 청소년의 권리 명시(제3조)
다. 아동 · 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 아동 · 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라. 관계기관 간 협력 및 비밀 엄수의 의무 규정(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0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미세먼지나 경제적 부담 없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운영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구의 지속적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제7조의2제1항)

나.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 이용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7조의2제2항)

다. 시립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신설(제7조의2제3항)

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7조의2제4항)

[별표 1]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제7조의2제3항 관련)

대 상	감면액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	전액 감면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1호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의2 중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버스정책 시민위원회"를 "위원회"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50명"을 "2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1부시장"을 "도시교통실장"으로, "버스정책분과위원장이 겸임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년으로 하되"을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제3호 중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5개) 체계를 단일 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분과 간 연계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나.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장 직급을 현실화하여 위원장 대리출석으로 인한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분과 구분 및 분과위원회 운영 내용 삭제 (제6조 삭제)

나. 위원회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수 축소 및 위원장 변경, 위원 임기연장

- 위원 수를 5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에서 도시교통실장으로 변경(제3조)
-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2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으로 유사한 조항을 분류한다.
(제1조~제5조를 제1장 총칙, 제6조~제9조를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제10조~제14조를 제3장 표창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제18조를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하는"을 "수여하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5조로 한다.

제3조를 제6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를 제7조제1항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5조제3항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를 제7조제2항 "봉사로 지역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5조제4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표창장) 3.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지역

사회 또는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5조제5항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제7조제4항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를 제9조제1항 “의정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2항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를 제9조제2항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3항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를 제9조제3항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제1항 본문 중 “단”을 제10조제1항 “다만”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의 추천권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고 한다)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및 각 기관·단체장으로 하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의 추천권자가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의 추천권자가 의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하 “외부공무원”이라 한다)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외부공무원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이하 이 조에서 “표창”이라 한다)을 받은 자
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의원이 아닌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무처 각 부서의 장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제2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표창업무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표창의 취소)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
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

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권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표창권자는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표창권자가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신설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표창수여 사실확인) 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여 사실확인 신청서와 해당 신청서 상에 명시된 첨부서류를 표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표창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표창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자에게 별

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기록의 보존·관리)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부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표창권자는 표창의 추천, 공적심사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제1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표창을 수여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표창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공적사실 조사 및 표창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등 표창 조례 운영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으로 유사한 조항 분류

나. “공정한 표창 기회 부여”라는 표창의 원칙 신설(제4조)

다. 표창 추천권자와 추천절차 수정, 타기관 공무원 추천 시 절차 강화(제11조)

라. 표창 추천 제외대상 구체화(제12조)

마. 공적사실의 확인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제13조)

바. 제1·2공적심사위원회 소관업무 및 간사 수정(제14조)

사. 표창의 신뢰도와 책임성 제고를 위해 표창 취소 규정 신설(제15조)

아. 표창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6조)

자. 표창대상자에 대한 표창수여 기록을 보존·관리하는 규정 신설(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3호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4. "폭행·폭언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행, 폭언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제3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피해 공무원 등 지원) ①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심리상담
3. 법률상담 및 민 · 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지원
4. 피해 치유를 위한 격리 및 적절한 휴식 부여
5. 피해 공무원 등이 해당 업무를 더 이상 담당하는 것이 크게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업무 교체 등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구비와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
2. 안전용품 구비 및 사용 교육
3. 폭언 · 폭행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공무원 등의 신속한 분리
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 · 폭행을 반복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5. 다른 공무원 등에게 추가 폭언 ·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6. 중대한 폭언 · 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신속한 보고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피해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 ·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폭언 ·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 ·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호와 제3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업무’, ‘공무원 등’, '폭행·폭언' 등 용어 정의(제2조)
– 폭행·폭언 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포함.
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제4조)
다.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사항 및 경비 지원 근거 마련(제5조)
라. 소속 부서장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 부여(제6조)
마.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관련 사항(제7조)
바. 각종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제8조)
사. 일부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제9조)
아. 해당 업무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규정(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4호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하고,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심의 · 조정”을 “심의 · 자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심의 · 조정”을 “심의 · 자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 “분야별 정책의”를 “연도별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자문 · 조정 · 심의의”를 “심의 · 자문의”로 하며, “마련해야 한다”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심의 · 조정과”를 “심의 · 자문과”로 하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를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4회”를 “2회”로 한다.

제5장 제목 중 “NPO지원센터 등”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NPO지원센터와 권역별 NPO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를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 중 “각 센터는”을 “센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3. 시민공익활동과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4.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
5.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6.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7. 시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8. 권역별 시민공익활동 관련 특화 사업
9.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2조제3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위원회의”를 “시장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센터는 협약 만료 시까지 그 명칭은 유지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조정하고, NPO지원센터가 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익활동지원이라는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센터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며, 위원회 운영방식 효율화 및 당연직 위원 현행화를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조정(제13조제1항~제4항)
나.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관련 부서장 자료제출·출석 등 요구를 협조 요청으로 완화(제13조제4항)
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정기회 개최횟수를 연4회에서 연2회로 조정(제16조제3항)
라.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승인을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제22조제3항, 제24조)
마. NPO지원센터 명칭을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기능을 조정(제20조, 제21조)
바. 당연직 위원을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에서 시민사회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현행화(제1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5호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과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
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전년도 추진실적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4. 창업 상담과 교육
5.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6.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언론사,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취업과 창업 등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년의 범위를 고용노동부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사업을 참고하여 만40세 이상 만60세 미만으로 정의함(제2조).
나.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내용을 규정(제3조).
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규정함(제4조).
라. 실태조사의 주기를 정함(제6조).
마. 행정권한 이관방식을 명확히 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6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학생,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 1. 13.) 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가지게 되었음. 이에 따라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육경비 보조의 적용 대상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생까지 확대함(제2조 적용범위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7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시의회,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8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본문 중 "시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를 "시의 부담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수도계량기 보호통이 훼손, 노출 또는 수도계량기로부터 이탈되어 동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계량기 교체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연재해로 인한 수도계량기 파손 또는 동파 시, 수도사용자등이 보온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손이나 동파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온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에 드는 비용을 시가 부담하도록 함(제4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79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외한 생활주변의 소규모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재정지원신청 등)”을 “(재정지원신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을 “(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을 “친환경차량과장·기후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협회의 이사”를 “이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사장이 추천하는 해당 조합의 임원”을 “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자 또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이상의”를 “2 이상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인증 · 보급 되지”를 “인증 · 보급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고당시보다”를 “출고 당시보다”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5조의2제3호 중 “차령과”를 “차령을 고려하거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에 대하여”를 “에게”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4장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을 삽입한다.

제20조의 제목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을 “(소규모 배출원 규제)”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소규모 배출원 규제)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2.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 설치
3. 직화구이 음식점 등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소규모 배출원 지원) 시장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규모 배출원 규제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회수시설 설치 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5호)

나. 소규모 배출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제20조)

-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세탁소로 한정하였으나, 세탁소, 인쇄로, 도장시설 등으로 확대

다. 소규모 배출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함(제21조)

라.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0호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 야생생물"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보호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법인·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협력)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6조(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방지 및 구조·치료 등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7.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민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보호 야생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種)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및 고지대 등의 일정 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되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종명
2.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 또는 해제 일자
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5. 주요 생태적 특성
6. 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보호 야생생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 ①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

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식물을 포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보관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학술연구 또는 보호 야생 동·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법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 야생 동·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9.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10.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야생생물이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보호 야생 동·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11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1. 희귀 생물의 서식지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식물군락 분포지 및 자연습지지역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3. 보호 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보호계획)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생물의 보호와 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 안의 야생생물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
3.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호구역 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태계 및 야생생물 변화관찰의 내용·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하천 ·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2. 토석의 채취 및 오염
3. 수면의 매립
4. 불을 놓는 행위
5.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 증축(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 · 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 ·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 · 허가등을 하는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 · 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허가 없이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제14조(출입제한) ①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인정하는 학술조사

2. 시장이 인정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행위
3.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4. 보호구역 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 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3조제1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한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보호구역의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따른다.

제17조(철새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서식지역의 보호) ① 시장은 철새도래지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집단도래지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려면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철새보호구역이 아닌 야생생물의 서식지역 중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보호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18조(야생동물의 구조·치료) 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의 구조·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비용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시장은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장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20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① 시장은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및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류 이동경로 등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자문 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조치 반영 여부를 심의·자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 피해 저감을 위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시민참여

제22조(시민에 의한 야생생물보호)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야생생물 보호지역·철새보호구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야생동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야생생물보호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4조(표창) 시장은 야생생물보호 및 이용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5조(야생생물 보호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한강사업본부장 및 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1.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행위중지·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식물의 제거 등 제6조, 제12조에 따른 세부계획 및 보호계획 등에서 정하는 사항
5.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나. 시장 등의 책무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제4조 ~ 제5조)
다.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사항(제6조 ~ 제10조)
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1조 ~ 제17조)
마. 야생동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제18조 ~ 제19조)
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제20조 ~ 제21조)
사.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제22조 ~ 제2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1호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7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생태축”이란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
4.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5. “자연자산”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유형·무형의 가치를 가진 자연상태의 생물과 비생물적인 것의 총체를 말한다.
6. “유전자원”이란 유전(遺傳)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은 법 제3조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자연환경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의 도시 및 국제단체 등과 관련 정보·기술 등을 교류·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법인·단체 및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의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협력) 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운동 및 민간부분의 참여·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및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제7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①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2.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②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이하 "핵심구역"이라 한다)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이하 "완충구역"이라 한다)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변경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2. 지역의 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조정면적이 해당 지역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지역의 명칭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5.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6.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8.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① 법 제25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립하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 등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안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태계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변화관찰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변화관찰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해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의 설치 및 그 밖에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撒布) 또는 주입하는 행위
2. 하천·호소(湖沼)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수면(水面)의 매립
5. 불을 놓는 행위
6.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사전 통보가 어려우면 사후에 통보할 수 있으며, 제7호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7.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인·허가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은 사업 등을 시행하기 전이나 인·허가등을 하기 전에(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하기 전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훼손 또는 옮기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④ 제2항제8호 후단의 규정에 따른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생태탐방 또는 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보전구역의 관리계획에 반영된 자연학습장이나,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자연환경의 교육·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제11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제10조제1항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원상회부)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알맞은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일상적 농림수산업의 영위 등 생활영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해당 지역주민
2.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경영·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그 밖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보전 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제한에 관한 근거 법규
3.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및 기간
4.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5. 출입제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6. 출입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 등의 매수) 시장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14조(자연경관의 보전) 시장은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구릉지, 하천 및 습지 등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자연경관영향의 검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으로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자연경관영향검토의 대상사업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인·허가등을 하려면 해당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지역 경계로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2.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등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검토를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검토의 사전절차 및 검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제16조(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부합하는 서울특별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시민·관계전문가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한다) 및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사업)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분포 및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제4장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

제19조(자연환경조사)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요 산림·하천 및 그 밖에 자연상태의 변화 파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의 출입
2. 조사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3.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관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9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및 제1항에 따른 정밀·보완조사에 있어서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출입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제21조(자연환경조사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및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이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자연환경조사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 등의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와 토지이용현황 등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서울특별시생태·자연도(이하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등급구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한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자연환경정보의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환경정보의 합리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환경조사의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현황, 생태·자연도의 작성내용, 그 밖의 자연환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자연자산의 관리

제24조(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①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식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영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른 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전가치가 있는 주요경관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자연형 하천정비) ①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기관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고려하여 하천을 정비함으로써 자연경관의 조성, 야생동·식물의 서식 및 시민의 휴식지로서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관리기관은 복개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도 이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하천의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형 하천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하천의 관리기관은 자연형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자연환경의 복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 등과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복원을 할 수 있다.

1. 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2. 외래 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지역

4.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지역
5.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6. 그 밖에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훼손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역별 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을 복원할 때에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축적된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 복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적
3.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과
5.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제27조(생태도시의 조성) ① 시장은 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태축·생태통로 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시행함으로써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에너지의 절약, 자원의 재활용, 녹지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우수한 자치구·주거단지·건축물 등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로·건축물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려는 자는 생태통로 또는 소생태계의 조성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장 시민참여

제28조(시민에 의한 자연환경보호·관리) ① 시장은 산이나 하천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등을 지정하여 이를 보호·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30조(표창) 시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자연환경보전 교육·홍보 등) ① 시장은 자치구, 교육기관, 자연환경보전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생태학습관 등의 운영) ① 시장은 제10조제7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학습관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학습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태환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학습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대관 허가를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대관자가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 전액 반환
3. 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대관료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반환

⑤ 대관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감면기준, 반환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부과·징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및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관할구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는 한강사업본부장 및 공원여가센터장에게 각각 이를 위임한다.

1. 제10조제1항·제3항·제6항,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의 위반에 대한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행위중지·원상회복 및 상응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청소 및 유해동·식물의 제거 등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5. 제32조 생태학습관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법 제66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복원 근거가 미흡하므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생태계'를 '자연환경'으로 변경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며 복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사항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원칙에 관한 사항(제2조)
나.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제6조)
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제7조 ~ 제15조)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제16조 ~ 제18조)
마.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제19조 ~ 제23조)
바. 자연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24조 ~ 제27조)
사.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제28조 ~ 제3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2호

서울특별시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서울시 홍보물 · 영상물 및 간행물의 대상 구체화(제5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자료 기증)”을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되, 예비평가는 수증심의위원회가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를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증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고, 시장이나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관장”으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증심의위원회) ① 기증대상 자료의 심의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에 수증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수증 자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심의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수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증대상 자료의 수증 여부
2. 기증대상 자료의 범위선정
3. 그 밖에 기증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수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실무위원회·평가위원회·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본문 중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실무위원회, 평가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박물관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박물관이 기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유상기증과 무상기증의 절차를 규정함(제4조).

나. 자료 기증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 구체화(제4조제3항).

다.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규정함(제8조의2 신설).

라. 수증심의위원회를 포함하여 박물관자료 수집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제8조의3 신설).

마. 수증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4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역사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등 현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제2호 중 “공휴일일”을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성하되”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 중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명칭 및 위치(제1조 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역사박물관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2-1)
청계천박물관	성동구 청계천로 530 (마장동 527-4)
서울생활사박물관	노원구 동일로 174길 27 (공릉동 622)
한성백제박물관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방이동 88-20)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종로구 율곡로 96 (와룡동 5-9)
서울공예박물관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175-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개관일 확대(제2조제2호).

나.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제5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다. 운영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함(제11조제1항).

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한 규정을 추가함(제14조).

마. 대관허가 신청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함(제18조).

바.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규정을 추가함(제19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5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4호”를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2조제4호가목”을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조”를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제2조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를 “제9조”로 한다. ‘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이 중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을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② 시장은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중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법 제24조”를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17조”로 하고,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을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으로 하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광역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8조제1항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제2호 중 “공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전문도서관 관계자 중 3명”을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관계자 중 3명”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실무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실무위원회의”를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13조제4항제3호 중 “위임한 사항”을 “위임한 사항의 처리 및 의결”로 한다.

제14조 중 “실무위원회는”을 “분과위원회는”으로 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도서관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중 “실무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을 “제23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23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시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시 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도서관 업무”를 “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수집 지원”을 “수집 활동 지원”으로 하고, “보존”을 “보존관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 중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26조”를 “제2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9조”를 “제47조”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8조부터 제31조로 하며,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서울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4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서울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2. 서울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도서관, 교육, 문화 관련 종사자
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를 제33조로 하며 이중 “제44조”를 “제6조”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제34조부터 제36조로 한다.

제31조를 제37조로 하며 제2항 중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로 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프로그램 운영 및 북스타트 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의 종류 · 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한다.

제34조를 제40조로 하며 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① 시장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2(이재민) 제3호 가목, 나목, 제4호 가목에 따른 재난 이재민의 심리회복을 위한 도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상실·침수 등 피해를 입은 자
2.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
3.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자의 동거 가족

③ 제1항과 2항에 따른 도서지원 시 이재민 도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도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부터 제36조까지를 제41조부터 제4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 조항 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도서관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인용 조항 및 문구를 수정함(제2조, 제3조, 제6조 등).
나. 시장의 책무 관련 조항 수정함(제4조).
다. 서울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23조~제27조).
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시 기념품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제37조).
마. 지식정보취약계층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제4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6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술관"을 "미술관자료 중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소장작품 및 관련자료"를 "미술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미술관자료"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4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소장자료"란 미술관자료 중 미술관의 소유자료를 말한다.
4. "대관"이란 미술관의 전시실 사용을 허가 받아 미술작품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집"이란 미술관자료를 구입, 기증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미술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공휴일일"을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종전의 제10호) 중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소장작품 구입 및 관리 등”을 “미술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립)”을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미술작품을”을 “미술관자료를”로, “작품수집계획”을 “미술관자료수집계획”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소장작품 구입)”을 “(미술관자료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소장작품추천회의”를 각각 “미술관자료추천회의”로 하며, 같은 항 중 “한다), 미술관의 문화예술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을 “한다) 및 관장이 지정하는 미술관의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작품구입”을 “미술관자료구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장작품추천회의에서는 소장작품”을 “미술관자료추천회의에서는 미술관자료”로, “작품의”를 “미술관자료의”로, “소장작품 구입”을 “미술관자료 구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소장미술관자료 관리책임자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관의 소장작품을”을 “소장미술관자료를”로,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과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을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은 소장미술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을 “소장미술관자료출납공무원은 소장미술관자료관리관”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소장미술관자료의 보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관 소장작품”을 “소장미술관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작품”을 “소장미술관자료”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소장작품 열람 등)”을 “(미술관자료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술관 소장자료”를 “미술관자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항의 소장자료”를 “미술관자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소장자료”를 “미술관자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작품기증)”을 “(미술관자료기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을 “소장자(처)로부터 미술관자료기증신청”으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를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범위안에

서 기증미술품” 을 “범위 안에서 기증미술관자료” 로, “기증미술품의” 를 “그 기증미술관자료의” 로 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는 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한다.

③ 수증심의위원은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④ 미술관자료기증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중복 위촉하지 아니한다.

⑤ 수증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성하되” 를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의원” 을 “의원 및 당연직 위원” 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단서 중 “작품수집” 을 “작품구입” 으로 한다.

“별표 1” 을 “별표” 로 한다.

<별표>(종전의 <별표 1>)의 주요기능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서울특별시립경희궁미술관란을 삭제하며, 같은 표의 명칭란 중 “난지 미술창작스튜디오” 를 “서울특별시립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로 하고, 같은 표의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eMA 창고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서울혁신파크 5동)
SeMA 백남준기념관	서울 종로구 종로53길 12-1 (창신동)
SeMA 벙커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지하 76(여의도동)
서울특별시립미술아카이브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 미술관 관계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 및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집 대상의 정의 및 범주 정비 필요함(제2조).

나.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체공휴일도 개관하도록 함(제4조제2호).

다.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를 관람료 면제대상자에 추가함(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라. 실제 운영과 불일치하는 미술관자료추천회의 구성을 현행화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명시함(제22조 및 제26조, 제31조제3항).

마. 운영자문위원회 외부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 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제28조제1항).

바. 미술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현행화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7호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의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 · 이용 · 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무장애 관광 지원) 시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민 관광복지를 확대하는 ‘무장애 관광’이 환경, 정보, 서비스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장애 관광과 관광약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8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를 같은 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친환경 관광을 명문화하여 그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정관광을 위한 지원사업에 친환경 관광 홍보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89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태권도 진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5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0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 계층 · 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 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 ·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보건의료기관
나.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다.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마. 법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바.「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및 제30조의3에 따른 지역외상센터
아.「암관리법」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자.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 · 장애인 · 외국인 근로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권역별 형평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시설 ·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이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취약지에서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의료기관과 협력하고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장을 임명한다.
③ 위원 중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와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3.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책임의료기관, 정부 지정 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책 수립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시장의 책무 명시(제3조)
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확보(제4조)
다.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제5조)
라. 협력체계의 구축(제6조)
마. 공공보건의료 위원회(제8조 및 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1호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응급의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환자 발생 현황, 응급의료 제공 현황 등 응급의료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조사 등을 통한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3. 응급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4. 응급의료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조직 등의 기반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의 시행 및 응급의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 범위 정비(제2조제5호).

- 기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 삭제

나.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4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2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를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시 실질적인 소득이 낮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지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을 “생활안정지원”으로 한다.

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제5조의 제목 “(생활안정지원의 내용)”을 “(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사업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주거비 지원
3. 의료비 지원
4. 해산·장제비 지원
5. 급식관련 경비 지원
6. 교육관련 경비 지원
7. 명절보상품 지원

8. 월동대책비 지원
9.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10.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1.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서울형 기초보장제도) ① 시장은 생활수준이 어려우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해산·장제비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에서 정한 기준 이내의 급여로 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서울형 긴급복지) ① 시장은「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서 실직, 질병, 사고,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관리대책(「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에서 정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가 발생할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례관리회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수준 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서울안심소득) 시장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재산기준 326백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중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안심소득(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50% 범위 내의 금액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례 없는 경제 불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안전망 붕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함(제1조).

나.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기준을 변경함(제3조제4항).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를 신설함(제4조제1항제4호).

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설함(제6조).

마.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설함(제7조).

바. 서울안심소득을 신설함(제8조).

사.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3호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쪽방주민"이란 시장이 별도로 정한 쪽방밀집지역에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쪽방주민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쪽방상담소 : 쪽방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나. 시장 및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쪽방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기관 또는 시설
3.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란 쪽방주민 지원시설에서 쪽방주민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기본적인 생활안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쪽방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주요 보건·주택·가족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쪽방주민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쪽방주민에 대한 지원 현황 및 성과 평가
3. 쪽방주민의 보건·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쪽방주민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6. 민간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자치구,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쪽방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쪽방주민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기본 현황
2. 쪽방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3.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그 밖에 환경변화에 따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쪽방주민의 생활안정 및 권리증진 상담 및 서비스
2. 쪽방주민 급식 서비스 및 식사제공 지원
3. 쪽방주민의 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쪽방주민 주거 안정 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
5.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
6. 그 밖에 쪽방주민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8조(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쪽방주민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쪽방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1. 쪽방주민 복지 분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쪽방주민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쪽방주민 관련 기관, 단체, 시설 관계 인사, 그 밖에 쪽방 관련 학계 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 ①시장은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제12조(지도 · 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관련위탁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쪽방주민 지원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시장은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쪽방주민·쪽방주민 지원시설·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5조 및 제6조).

다.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함(제7조).

라.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4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족돌봄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자치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족돌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라.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마.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
사. 민간전문가 활용 근거를 규정함(제8조).
아.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함(제9조).
자. 중복지원 제한에 관하여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5호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및 조형물 설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건립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참전유공자”로 개정함(제4조제1항제2호).
나. 참전유공자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6호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 ·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 ·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 ·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토킹’, ‘스토킹행위자’, ‘피해자등’ 용어의 정의(제2조)
나.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다. 시행계획 수립(제4조)
라. 피해자 보호 · 지원 사업(제5조)
마. 지원시설의 설치(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제7조)
사. 지원시설의 설치 · 운영 근거 마련(제8조)
아. 비밀 준수의 의무(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7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3 중 "임산부"를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양육 부담"을 "양육부담"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
6.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할"을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가족친화"를 "일·생활 균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4.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4 개정규정의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1일 현재 임신 중이었거나 2022년 7월 1일 이후 임신한 사람에게 소급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자녀양육가정의 양육부담 해소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시책 추진 시 국적·인종·종교·나이·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제3조제2항).

나. '임산부'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하여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의 지원과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제4조의3).

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시 계속 거주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함(제4조의4제1항제1호).

라.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과 자녀 양육가정의 식사지원 및 가사서비스 지원을 신설함(제5조제1항).

마. 일·가정 양립 지원을 일·생활 균형 지원으로 바꾸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을 신설함(제6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8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원의 범위)”를 “(지원의 내용 및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9호 중 “구호”를 “구호와 재난상황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높이고 불합리한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응교육”을 “적응교육과 상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제공
10.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조치 등의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11.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각 호와”를 “각 호와 제3항과”로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전하고 원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 시 대피요령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제1항제9호, 제7조제2항제9호).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제2항제1호).

다.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제공을 규정함(제7조제2항제2호).

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률서비스,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등과 아동학대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을 규정함(제7조제2항제10호 및 제12호)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7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499호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치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영아가정의 양육현실을 고려한 돌봄지원 확대를 통해 가정내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도시 서울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마을아이돌봄 사업으로 영아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 지급 사업을 추가함(제6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온마을아이돌봄 사업 수행을 위해 자치구, 법인 및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0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2.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3.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5.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6조 중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취·창업 역량 강화, 사회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을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현행에 맞춰 재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목적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제1조)
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제3조)
다. 시장의 재단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1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보육주간) ① 시장은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통한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보육교직원 또는 보육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보육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활동 장려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주간을 정하고 관련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하여 양육친화적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년 10월 넷째주를 보육주간으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6조).

나. 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2호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촉진활동"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돌봄 등"을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을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으로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제5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

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을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경력단절여성등에”를 “여성의 경제활동에”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경험 지원 사업
7. 구직·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2022. 6. 8.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 여성 등에게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규정에 경력단절여성등의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신설함(제2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통계의 작성 · 관리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규정함(제4조, 제5조, 안 제5조의2).

라. 경제활동촉진사업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 및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마. 경제활동촉진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6조제3항 신설).

바. 경제활동촉진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의2 신설).

사. 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의 범위를 상위법을 반영하여 확대하여 규정함(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3호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재난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른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일체의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3. “사고조사 보고서”란 사고발생 경위 및 원인분석, 결론 및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최종적인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재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발생한 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재난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서 재난에 대한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은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재난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
2. 재난유형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사건조사 및 조사 보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분야 총괄부서의 담당 서기관을 간사로, 담당 사무관을 서기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 총괄 및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와 의사결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사고 원인 및 경위 규명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고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 및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권고
6.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위원 위촉)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고조사에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재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고조사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고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그 사고조사 대상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사고조사 대상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고조사 관련 대상 등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사고조사 대상은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일시 및 장소
3.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4. 진행 순서
5. 상정 안건
6. 발언 내용
7.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8.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집행) ① 시장은 위원회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고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3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사고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만,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14조(예비 사고조사) ① 시장은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예비 사고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예비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고 현장관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고현장의 보존
2. 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위원회 사고조사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사고조사 계획수립) ①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고 상황과 현장 상태를 반영한 사고조사 방법
2. 사고 관련자 면담
3. 사고 관련 문서 목록
4. 사고조사 일정
5. 사고조사에 따른 예산편성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감정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30조에 해당되거나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할 경우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7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원, 검찰, 경찰, 중앙정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요

2. 사실정보
3. 원인분석
4. 사고조사결과
5. 재발방지대책 및 건의사항 등

② 위원회는 활동을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완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고조사 보고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사결과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절차와의 분리) 사고조사는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조사, 문제점 분석,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로써 서울시 재난 예방 및 대응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제2조).
나. 재난안전분야 총괄 부서가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3조).
다.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위원장의 권한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바. 회의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사.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아. 예비 사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자. 사고조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4호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옥밀집지역"이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부 칙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정의 정비(제2조제1호)

- 현행: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 개정: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5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부장 · 반장의 임명 기준) 대원에서 반장, 반장에서 부장으로 직위를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직위 임명에 관한 체계적인 절차 또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각 소방서별 동일한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대원 중에서 부장, 반장을 임명할 경우에 그 자격과 고려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적임자가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함(제7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6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 "서울시에 소재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구청장 및 구의회"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구의회가"를 "지방의회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제15조에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조례 적용 불합치 사항을 정비하여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관내에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제15조).
나.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 시 협의 주체를 제15조에 맞추어 조정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7호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의 저이용 · 유휴토지 등을 공공이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설 · 공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토지 활용” 이란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활용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민간토지사용형 :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공공주택을 건설 · 운영
   나. 공동출자형 : 민간과 공공이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공주택 건설 · 운영
   다. 민간공공협력형 : 민간사업의 공공기여를 주택(건물)으로 제공 받고 그 부속토지는 공공이 임차하여 공공주택 공급
2. “공공주택” 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사업계획” 이란 사업대상지에 대한 용도지역 · 용적률 · 공공기여 · 공공주택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등” 이라 한다.) 및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포함한다.
4. “공공기여” 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이외 기타 규제 등의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등의 부지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시설등” 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사업종료” 란 토지사용 협약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지원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의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민간의 저이용·유휴토지 등과 이 사업을 희망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주거지역
3. 준공업지역
4. 일반상업지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정책상 보전 및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
2. 양호한 저층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 역사, 문화,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등
3. 다른 법령에 의해 추진중이거나 계획 수립 완료된 지역 등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또는 공동주택 규모를 포함하고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공공주택 포함)

제6조(사업유형)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2. 「건축법」에 따른 건축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결정) ①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의 도시관리계획등은 관련 부서 협의를 포함한 사전검토·협상회의·외부전문가 자문 등 민간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대한 절차 등의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민간과 사업계획 및 토지사용에 대한 협의 이후 민간토지 활용 방법에 따른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8조(도시관리계획등 수립·제출) ①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1. 민간토지사용형, 공동출자형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대상지로 제안
2. 민간공공협력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

② 제1항에 따른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민간공공협력형은 도시관리계획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제안 시기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용도지역 변경 기준)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최대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1.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2. 도시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용도지역 계획
3.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연환경 훼손 및 경관 부조화 등의 최소화

제10조(용적률 기준)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로 계획하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용적률: 용도지역 변경 전 용도지역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2. 상한용적률: 제11조의 공공기여 제공 시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로서 변경 후 용도지역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

제11조(공공기여 기준) ①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부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민간토지사용형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민간공공협력형의 경우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공공기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등 기타 규제 및 계획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내외에서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완화가 둘 이상 중첩되는 경우 공공기여 총량은 각각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완화사항, 주변 여건, 규모, 및 민간의 제안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낮거나 높은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여는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공공협력형은 공공기여 총량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그 부속토지는 공공이 임차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이와 관련한 부속토지 활용(임차)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방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공공주택 계획) 공공주택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대상지에 따른 입주수요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비주거 비율, 공공시설의 종류, 공공주택 규모, 사회혼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토지사용 협약) ① 민간은 공공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공공은 이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② 토지사용료는 사업시행인 · 허가 전 민간과 공공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를 통해 최초 사용, 갱신 사용, 지급시기 등 결정하고, 평가액의 조정, 토지사용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공공주택 운영 기간, 도시관리계획등 규제 완화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공통된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종료) ① 사업종료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의 재산가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 정산 절차를 진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 등은 제13조제3항을 따르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수립, 토지사용 협약 지원
2. 사업 대행 및 사업성 분석, 예산검토
3.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요구할 경우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공사 사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기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 및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유형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상향 및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저이용·유휴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제2조).
나. 사업대상지 및 사업제외대상지 규정(제5조).
다. 사업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 절차를 규정함(제7조).
마. 사업의 제안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함(제8조).
바. 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규정함(제9조).
사. 용적률 기준을 규정함(제10조).
아. 공공기여 기준 및 방법과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부지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함(제11조).
자. 공공주택 건축계획의 방법을 규정함(제12조).
차. 토지사용 협약 및 토지사용료 감정평가 방법을 규정함(제13조).
카. 사업의 종료 및 청산의 방법, 절차를 규정함(제14조).

■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제안서

(제 1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 명 (법인 및 대표자 성명)	토지사유자가 권리 위임 시 위임장 첨부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토지현황	위 치			
	면 적	㎡		
	용도지역 · 지구		도시계획시설	해당 시 기재
	공 시 지 가			
	소유권확보 관련사항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관련사항 등 해당 시 기재		
	대 상 지 특 성	주변 여건, 건물 등 기타 특이사항 있는 경우 기재		
협의요청사항	사 업 방 식	[ ] 민간토지사용 [ ] 공동출자 [ ] 민간공공협력		
	사 업 계 획	도시계획 규제완화, 토지사용 협약(임대차계약) 등 협의 요청(제안)사항 있는 경우 기재		
	사업종료 및 청산	예시) 건물매입 또는 토지매각 (운영기준의 사업종료 및 청산 참고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의 본인 정보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관련 법령, 조례 및 운영기준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첨서류

1. 토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2. 위임장(해당 시)

유 의 사 항

1)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한다.
2) 신청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명날인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 2 쪽)

☐ **사업계획(안)** ※ 제안계획 있는 경우 작성

구 분	내 용	비 고
용도지역 변경	*00지역 → 00지역*	
용 적 률	기준 : *000% 이하* 상한 : *000% 이하*	
도시계획시설 해제 · 복합화		
기타규제(계획) 완화	*예시)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등*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규제(계획) 완화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공공기여 비율	계획 : *00% 이상* 기준 : *00%*	*산출 근거 기입,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계획(안) 있는 경우 별도 작성 가능*
사업계획 개요		

☐ **기타 검토** ※ 검토사항 있는 경우 작성

구 분	기타 검토사항
상위 및 관련계획	*내용*
사업필요성	*내용*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8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고시원 및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입주·정착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재 비주택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경제사회적인 문제로 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보증금과 이주비를 지원하여 거주희망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거주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함.

2. 주요내용
비주택 거주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7조제12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8509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법 제43조의2제1항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및 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지역 내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층수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100분의 3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용적률)+(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2.5)+(관리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최대25퍼센트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2. 8. 4. 시행)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상한이 삭제됨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된 층수제한을 보완・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촉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2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시 토지수용권이 없는 경우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이주 및 철거시 보상 갈등 초래 및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바,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축물 층수제한을 두지 않음(제34조제3항 신설).

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44조의4제3항 신설).

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50조제1항제2호).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대상지 내 주택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경과년수를 20년으로 함(제2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연”을 “2년에”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호 본문 중 “0.8배”를 “0.5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을 “높은 건축물의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의 용도 중 “가설점포”를 신설하고 구조를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면적을 “제한 없음”, 기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 시장정비사업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 준공까지의 임시 가설점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사감리자 명부의 유효기간이 짧아 많은 행정력 소모와 함께 수요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작성 기간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21.11.2. 개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정비사업 공사 중에도 세입자 등 영업권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가설점포) 축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기간을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변경함(제18조의2제1항제1호).

나. 공동주택 인동간격을 시행령과 같이 개선함(제35조제4항제1호, 제35조제4항제2호).

다.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에 ‘가설점포’를 추가함(별표2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1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시행과 그 밖에"를 "종합적인 활용·관리를 위하여"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을 "시 공간정보체계의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서울시"를 "시"로, "수립·시행한다"를 "수립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9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8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목록정보"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보급·활용 촉진"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3조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를 “법 제3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시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시 공간정보의 보호

제16조의 제목 “(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를 “(보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위하여 공간정보의”를 “위하여”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보안심사)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4 및 영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24조의3에 따른다.

제20조(보고 및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목적·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간정보 개방·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국가공간 정보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14조제2항 등).

나.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사업자의 보안수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보안심사 규정을 신설함(제17조).

다. 공간정보 사용기업에 대한 보안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함(제18조, 제19조).

라. 기타 제호 및 조문 체계, 자구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2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6471호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칙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1월 18일까지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시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작품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제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 시행일, 공공미술위원회의 존속기한(2027. 11. 18.)을 명시함(부칙 제1~2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8513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년의 문화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문화바우처 지급 근거 규정 신설함(제16조제3항).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42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2022년 10월 17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주관부서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청원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처리부서가 되며,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청원심의의 원칙)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는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2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8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가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 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주관부서에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청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원법」이 전부개정(2021.12.23.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2021.12.21.)됨에 따라 청원 처리의 객관성 ·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9항 등 청원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주관, 청원내용의 조사,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등 접수된 청원의 실제 처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안 제2조)

나.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안 제5조)

다.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을 심의(안 제8조)

라.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안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 . .
심의의견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청원사항	청원명			
	청원인 성명		청원인 생년월일	
	청원 요지			
요구사유				
검토의견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출 석 통 지 서

출석부서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사정에 의하여 서면의견서로 출석을 대체 하고자 할 때에는 청원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따라

위와 같이 귀 부서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ㅇㅇㅇ 귀하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서울특별시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31 문의 : ☎120